

[변경대비표]

가. 대상 펀드 : 교보약사 파워인덱스 증권투자신탁 1호(주식-파생형)

나. 변경 시행일 : 2014년 12월 12일 (금)

다. 주요 변경 내용 :

구분	사유	정정전	정정후
[표지] 효력발생일	효력발생일 변경	2014년 7월 22일	2014년 12월 12일
투자결정시 유의사항	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('14.10.01)사항 반영	<신 설>	11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 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집합투자업자 (www.kyoboaxa-im.co.kr)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'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'	연혁 신설	<신 설>	- 투자대상 확대 (채권 투자대상에 전자단기사채 추가, 환매조건부매수 신설,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변경) - 기업공시서식기준 개정('14.10.01)에 따른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신설 -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(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중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)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'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', "가. 투자대상"	채권 투자대상 중 전자단기사채 추가	② 채권 -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	② 채권 -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

		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통화 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	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통화 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「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'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', "가. 투자대상"	'집합투자증권등'에의 투자한도 변경	집합투자증권등 :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5%</u> 이하	집합투자증권등 :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40%</u> 이하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'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', "가. 투자대상"	투자대상 신설	<신 설>	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액으로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계약) :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 이하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', "나.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 및 절차"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(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중 소규모펀드 임의해지에 관한 사항)	① (생략) <신 설> ② 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	① (현행과 같음) -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 ② 법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투자신탁의 해지, 투자신탁의 합병,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의 전환, 투자신탁의 존속 등 이 투자신탁의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.